고성군마스코트「고룡이」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

(의안번호 제487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7. 30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7. 15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7. 18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7. 29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정이유

○ 고성군마스코트「고룡이」 등록상표로 군 업굴상품 홍보와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여 세계화,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타 시군과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○ 상표를 특산물등에 표시, 광고 ·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 (안 제3조)

- 국가나 도, 군, 농협등 공신력있는 기관단체 등에서 인정받은 상품
-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명품, 경쟁상품 생산자

○ 상표사용 신청시 20일이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신청이 있을 때는 2년간씩 계속 연장(안 제4조)

○ 상표의 사용료(안 제5조)

- 농 · 수 · 축산물 및 그 가공품(공산품) : 무료
- 일반공산품 : 상품 판매금액의 3/1,000
- 캐릭터상품 : 상품 판매액의 10/1,000이상 쌍방간 협의에 의거 결정

○ 상표사용 승인 받은자가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때 상표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일로 부터 2년간 재사용 승인할 수 없다.

○ 이 조례시행과 동시 고성군「고룡이」 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에「고룡이」상표사용 승인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 특산품을 대내외 홍보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고성군마스코트 「고룡이」상표에 관한 규정('96.11.9호)에 의거 사용되어 왔으나

○ 특허청「고룡이」상표등록('97.12.29)됨에 따라 군얼굴 상품을 브랜드화 하여 대외홍보 및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21세기 세계화, 지방화를 대비한 관련 법령을 명문화 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종전에 사용한 「고룡이」상표사용에 관한 규정사용 근거는

● 답 : 종전에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, 상표등록('97.12.29)으로 인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.

○ 문 : 고룡이 상표만 가지고 군상품을 전국적 이미지로 대표할 수 있는지

● 답 : 조기시행함이 전국적 이미지로 차별화 할 것으로 판단되며, 예산관계로 일부 상품에 한하였지만 성과가 좋으면 최대한 예산확보하여 확대방안 강구하겠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8. 7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